

4·3정책 질의 및 철회 촉구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경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고 4·3특별법¹⁾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²⁾하였습니다.

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확대 지시는 4·3역사전문가와 법조인들은 물론 군 예비역과 대한민국 애국세력들을 맨붕상태에 빠트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교체 기쁨은 잠시, 좌익 적폐청산을 갈망하는 자유우파 국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지지부진한 적폐청산에 절망하고 있으며, 이번 한동훈 장관의 반역적인 정책이 보도되면서 자유진영의 현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4·3수형인 직권재심 지시는 대한민국이 적화된 이후에라야 공산정권이 논공행상 차원에서 시행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4·3사건의 성격이 공산폭동과 반란이라는 사실은 이미 헌법재판소 2000헌마238사건에서 전원일치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4·3특별법은 여야합의로 통과되었을지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반하는 위헌법률에 해당하여 현재 동법률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판중에 있습니다.³⁾ 위헌여부의 최대쟁점은 4·3사건 및 희생자 정의, 특별재심, 직권재심, 수형인에 대한 보상 문제 등입니다. 이들 규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며,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민국 정부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서 제출은 못할망정 법률의 위헌성을 가중시키는 방안을 지시하였으니 큰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좌파진영에 유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진행중인 4·3특별법 위헌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이 조치는 당장 철회되어야만 합니다.

4·3수형인들이 당시 고문과 적법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군사재판, 일반재판 모두 포함하여 4,000여 명의 수형인 중에 고문이 있었다는 확정판결을 얻어낸 수형인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법한 재심재판들(모두 무효처리되어야 함)을 제외하고 재심청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4·3수형인은 모두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법무부 보도자료, 2022. 8. 10.

3) 2021헌마514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2조 1호등 위헌확인

고 이들에게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재심청구를 하지 못하고 지난 70여 년간 유구무언이었던 것입니다. 그간의 친북정권은 집권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차근차근 왜곡하여 왔고, 그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백분활용하여 다수결의 힘으로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작업을 집요하게 하였으며, 마침내 여야 합의로 제주4·3사건의 진실을 왜곡·날조하는 법인 4·3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별개로 정권이 교체되면 왜곡된 4·3역사를 시정하는 역할을 행정부에 기대하여 열심히 정권교체에 앞장섰으나 행정부의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포기한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 실망의 늪에 빠져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는 아래의 위헌적인 정책을 즉각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 지시는 좌익진영의 목적에 부합하는 반역행위입니다.

4·3수형인은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꿈꾸며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선거를 방해 저지하고자 공산폭동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며, 국사범으로 국법에 따라 처벌되었던 자들입니다. 당시 제주도에 6만~7만여 명의 남로당원(공산당원)이 활동했고⁴⁾, 그 가운데 내란죄 등의 죄목으로 형을 살은 4천여 명은 남로당의 지령을 실천한 핵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좌우진영을 떠나서 4·3일반재판 수형인을 억울한 희생자 범주에 포함시켜 구제하겠다는 취지로 언론에 보도한 것이 진심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공산주의 북한과 대치상태에 있으므로 당연히 대한민국 진영 편에 서서 북한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여야 정치세력간의 문제인 정치적 중립의무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자유의 적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재판 수형인을 억울하다고 보는 인식은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반헌법적입니다. 진영을 떠나 좌파진영의 요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이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사이에 중립을 지키겠다는 뜻이라고 하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해부족이며 결과적으로 반헌법적인 반역에 해당합니다. 자유진영의 주장과 이익을 무시하고 좌익진영에 유리한 정책은 자유진영을 배신하는 반역 그 자체입니다.

4·3수형인은 억울한 자들도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였던 초중범죄 자들로서 극형에 처해졌어야 하지만 관대히 처벌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 인민유격대에 자원 입대 활동하여 한라산에서 김일성 장군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 인공기 게양, 적기가를 부르고, 또 남로당 읍면위원회의 마을 자위대 활동으로 마을 우익단체 사람들을 살인, 가옥 방화, 식량·의복 약탈 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74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무슨 근거로 김일성 만세!를 부르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4) 제주4·3사건 자료집 9, p.284 "...It is estimated that **between sixty and seventy thousand people** on the Island actually joined the South Korean Labor Party..."

적대했던 수형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특권까지 부여하면서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시키려고 국민을 선동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3특별법 제15조 1항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4·3특별법에는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만 직권재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는 법률의 범위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통과된 4·3특별법 제14조는 4·3수형인은 모두 특별재심 대상은 되지만, 제15조 직권재심 대상은 군사재판 수형인만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8월 10일 법무부 보도자료 취지는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 대상에 포함시켜 개별적인 특별재심 소송청구 부담을 완하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문재인보다 한걸음 더 좌편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4·3에 있어서 피고 대한민국을 변호하는 법무부는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권고가 들어와도 거부해야 마땅한데, 권고를 수용하는 정도를 넘어 대한민국 적대세력이 원하는 일반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까지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반역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사실에서 이는 경악할 사태입니다.

따라서 법에도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지시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 지시가 4·3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해하여도 이는 문재인 좌파 정권조차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한동훈 장관이 4·3을 정당화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뜻이며 남로당에게 면죄부를 주는 반역이 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한 직후인 2022년 8월 12일에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김한규 등 10인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를 담은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16841]을 제안하여 현재 위원회 심사중입니다. 지금이라도 법무부의 국회 견제기능을 작동하여 4·3특별법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국난을 극복하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셋째,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지시는 법치 파괴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억울한 국민은 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3의 경우 억울한 수형자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법인 4·3특별법을 제정하여 4천여 명에 해당하는 4·3수형인들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였습니다. 4·3수형인들에게 적법절차를 문제 삼아 특별재심을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군사재판 수형인과는 달리 일반재판 수형인은 판결문도 엄연히 존재하고, 제9연대 고등군법회의(1948. 12. 3) 이전에는 육지부에서 파견된 재판관들이 재판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고, 당시 모든 사법절차는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음에도 일반재판 수형인들에게까지 직권재심 확대조치는 법치를 넘어선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인데 이는 법치 파괴행위가 아닙니까?

문재인 친북정권이 들어서자 확정판결을 요하는 재심요건을 면제해주고 사실증명으로

같음해 주고 있으나 사실증명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증거가 될 수 없어 역시 형사소송법 제422조 단서⁵⁾에 따라 재심청구가 불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공정과 법치를 무시한채 제주지방법원은 정치재판으로 재심개시 결정을 받아주었고 법무부와 검찰은 불복하지 않고 오히려 무죄를 구형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했던 무리와 합세하여 대한민국 정체성을 파괴하여 왔습니다. 검찰의 무죄구형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모두 대한민국 정체성을 파괴하는 일에 합세하여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합당한 재심이유 없이 재심청구를 쉽게 허용하여 주기 위해서 악법인 4·3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치와 국가의 계속성을 합법적으로 파괴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법무부가 편승하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본 단체는 법무부를 포함하여 14개 국가기관에 '제주4·3 사건 정책제안서'를 민원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귀 기관은 정책제안서의 내용을 철저히 관철시켜 법무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 4·3수형인 및 그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은 위헌입니다.

4·3당시 남로당측에 의하여 우익측 1,700여 명이 피살되고 관서와 민가 등 방화, 파괴, 그리고 납치와 약탈이 수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로당측의 불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들은 연대하여 국가 및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배상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4·3의 진정한 피해자는 우익측 피해자이며 국가는 이들의 억울함을 신원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합동수행단을 조직하여 남로당 수형인들을 위해 활동할 것이 아니라 남로당 가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4·3직권재심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합동수행단을 해체하고 1,700여 명의 피해사실과 4천여 명의 수형인의 불법행위 사실을 조사하여 피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배상책임자와 그 유족을 파악하여 이 자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수행단을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국가 예산으로 일률적으로 남로당에 부역했던 가해자들에게 배보상을 못해 안달하는 것은 역사 파괴이자 정의 파괴입니다. 배상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배상책임은 면제하여 주고 오히려 직권재심을 확대하여 줌으로써 국가가 배보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이중배상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부당지급에 해당하여 국고손실죄가 성립될 수 있어 이후 관련자는 처벌 및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무고한 희생자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어 왔던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별이 되지 않아 가해자에게는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정의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무고하지

5) 형사소송법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많은 4·3가해자들이 희생자가 되게 해달라는 요구는 배보상이 전제된 법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공산주의자’ 낙인만 제거하여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에서 이념의 희생자 측면에 착안하여 희생자 범위를 넓게 잡았던 것이지, 이념의 희생자라고 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던 사실 자체가 용납되고 나아가 배·보상금을 청구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정치적 희생자 범위가 그대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희생자인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강경진압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국가가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하지 않은 자로서 교전중에 사살된 1천여 명, 사형집행 당한 수백명, 확정판결 받고 수형 생활한 4천여 명 등 이러한 반역 및 부역세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배보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현재 민간단체에서 파악한 부적격 희생자 3천여 명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이뤄져서 평화공원에 진정한 희생자만이 모셔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여 년간 좌편향 인사위주로 구성된 4·3위원회에서 발간한 왜곡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지만 정치인들의 제주도 표심을 얻기위한 대표행위의 결과물인 제주4·3특별법, 제주지역 민심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제주지방법원에 의한 4·3재판, 좌편향 기관에 의한 4·3정책, 역사왜곡의 현장인 제주4·3평화공원과 유적지 등 제주도의 좌편향된 역사왜곡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도 좌파들의 말만 듣고 정책에 혼선을 빚은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자유우파진영의 진심어린 여론을 경청하여 진실 발견과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주는 정의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여섯째, 편파적인 법무행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법무행정이 좌파에게는 유리하게, 대한민국 세력에게는 불리하게 하는 사례로서 인민혁명당 사건이 있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⁶⁾에 의하면 법무부는 부당이득을 취한 인혁당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지연이자를 면제해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진영논리를 초월하여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국가의 임무를 다 하려는 것이고 오직 팩트,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표현은 국가가 마치 이들로 부터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채권자는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당연한 권리의무관계에 해당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연이자를 납부하는 것이 억울한 일이라고 하면 법을 준수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도 된다는 뜻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진영논리를 초월하여 매번 좌파진영에 유리하게 법무행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을 하는 것에 진영논리를 굳이 결부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결부시킨다면 자유진영 논리가 헌법에 부합하므로 자유진영 논리에 따라 법집행을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법에 따라 당연히 지연이자를 징수해야 하는데 징수하지 않는 선례를 남긴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억울함’이라는 표현이 설 여지가

6)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A, B 유족에게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법원 화해권고 수용’ 법무부 보도자료, 2022. 8. 14.

없는 사안에서 ‘억울함’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인민혁명당 사건을 더욱 정당화해주고 상대적으로 국가에 대해서는 나쁜 이미지를 덧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근간에 해당하는 쟁점에서 거둬지는 실책이 정권의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좌파는 한동훈 장관의 좌편향 정책에 환호하겠지만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진영은 벌써 현 정권의 좌편향하는 것들로 인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각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4·3사건의 원인과 성격을 정확히 알아보고 4·3특별법이 헌법정신 및 진실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제정된 악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이 분야에 도움을 주고자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에서 법무부에 정책제안서를 2022년 7월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본 단체가 귀 기관에 제안한 민원(접수번호 4587, 2022. 8. 29.)은 한편으로는 행정안전부로 이송하였다는 회신을 받았고(혁신행정담당관실-11017), 한편으로는 귀 기관의 공공형사과에서 접수하여 제주4·3사건 관련 정책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공공형사과-2052, 2022. 8. 5.) 본 단체의 정책제안서를 참고하겠다는 귀 기관의 결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놓는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라고 하면 결국 자유진영 즉 대한민국 세력과 결별하겠다는 전쟁선포로 간주하겠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위헌위법한 지시를 철회하고 이 사실을 국민에게 공표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세력은 현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대한민국 세력이 정권을 탈환하는 날 이러한 반역에 대하여 반드시 관련자 모두를 처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바라건대 한동훈 장관은 대한민국 형사법체계를 부정한 과오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좌익의 이익을 도모하는 적대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단체의 정책제안서를 참고하여 왜곡된 4·3을 시정할 의지가 있는지 조속한 시일내에 분명하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기관이 본 단체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적극 지원하고 협조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시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인혁당 사건 지연손해금 면제, 4·3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 지시 등 국익우선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계속성에 저해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이니 즉각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그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밝혀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법무부가 잘못된 정책을 지속한다면 정부 여당에 대한 그동안의 지지를 철회하고 대한민국세력이 대동단결하여 국가 정상화를 위한 활동에 나설 것임을 알려드리며, 본 정책에 대한 철회여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7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